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지정 공고

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제2항 및 「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회계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30조 제5항에 따라 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 금고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(금고)을 지정하고,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융기관 총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11월 17일

부산·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

1. 금고지정개요

- 약정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(3년)
- 취급업무

| 구분 | 금융기관명 | 취급업무 |
|------|-------|---|
| 제1금고 | 부산은행 | ▶ 부산지역 사업 세외수입 및 보조금 자금관리 ▶ 기획행정부·투자유치부·기업지원부·개발1과 소관 지출 |
| 제2금고 | 경남은행 | ▶ 경남지역 사업 세외수입 및 보조금 자금관리 ▶ 개발지원과·개발2과 소관 지출 |

2.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평가결과

| 구분 | 금융기관명 | 총점 | 비고 |
|------|-------|-------|----|
| 제1금고 | 부산은행 | 83.86 | |
| 제2금고 | 경남은행 | 76.57 | |